

●산업통상부공고 제2026-235호

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4월 01일

산업통상부장관

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글로벌 공급과잉, 통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철강산업의 저탄소·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「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」이 제정(2025. 12. 16, 법률 제21202호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·실행계획 포함 내용 및 수립 절차 등 규정(안 제2조~제3조)
- 나. 철강산업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실시 방식과 통계 작성 범위, 관리 전문기관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~제5조)
- 다.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, 조정위원회, 전문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(안 제6조~제12조)
- 라.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, 재검토 및 지원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 규정(안 제13조~제14조)
- 마. 철강분야 실증·생산시설의 개방·활용 대상 기관 및 전담기관 지정 등 규정(안 제15조~제16조)
- 바. 철강분야 실증기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내용 및 절차 등 규정(안 제17조~제18조)
- 사. 철강분야 실증시험·성능검증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대상 및 절차 규정(안 제19조)
- 아. 저탄소철강 협력모델 선정 절차 및 지원 사업에 포함 내용 등 규정(안 제20조~제22조)
- 자. 저탄소철강 인증기준, 인증 절차, 지원 사항 및 인증 취소 등 규정(안 제23조~제29조)
- 차. 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기준,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 규정(안 제30조~제32조)
- 카. 저탄소철강 제품 수요 창출 우선구매 계획수립 요청 가능 기관 및 절차 규정(안 제33조)
- 타. 저탄소철강 특구의 지정 요건, 지정 절차, 지정 해제 및 지원 사항 규정(안 제34조~제37조)
- 파.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요건, 지정 절차, 지정 취소 등 규정(안 제38조~제40조)
- 하.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서 국가 전력망·용수 공급망·수소 공급망의 설치·확충에 관한 사항 심의·의결 시 행정 절차 규정(안 제41조)
- 거. 전문인력 양성사업, 전문인력 양성기관·특성화대학등 지정 및 해외 우수인력 조사·분석 결과 활용 등 규정(안 제42조~제46조)
- 너.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 기준 초과에 관한 규제 특례 대상 및 절차 규정(안 제47조)

더. 기업결합 심사기간 세부사항, 공동행위 승인 절차, 사업재편 정보교환 방식 등 규정(안 제48조~제50조)

러. 권한의 위임·위탁 범위,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(안 제51조~제52조)

3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18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
- 전자우편 : songseokwon@korea.kr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(전화 (044) 203 - 469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